

가맹단체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 규정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15. 01. 19.
개정 2017. 01. 10.
개정 2019. 08. 12.
전부개정 2020. 11. 19.
개정 2022. 12. 13.
개정 2025. 02. 18.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7장제34조에 근거하고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유형별 체육단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3.>

제2조(명칭 및 주소 등) 가맹단체는 당해 종목 및 장애유형별 체육의 대표성을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통괄 할 수 있는 용어로서 각 가맹단체가 영문 명칭을 포함하여 명칭을 정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협회(연맹)라 칭한다.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3조(목적 및 사업) ① 경기단체는 각 소관 경기종목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괄·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종목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연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
5. 해당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 동호인, 지도자 등록 및 관리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등급분류사,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10. 해당 경기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해당 경기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2.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유형별 체육단체는 각 장애유형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스포츠기구의 대표기구로서 해당 장애유형의 시도별 기구와 대외 협력을 통해 해당 장애영역의 스포츠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경기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장애유형별 국내·외 종합대회를 개최 또는 지원 할 수 있고, 우수선수·지도자 양성 등 해당 장애영역 스포츠를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관장한다.

1.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국내·외 종합대회 개최 및 참가
3.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시도별 기구와의 교류
4.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5.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6.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종목에 관한 선전·계몽
7.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도 경기단체와의 업무교류
8. 해당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위임)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에게 그의 희망에 따라 경기단체 소관범위 내에 경기대회 개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는 중앙경기단체와 협조하여 주최하여야 한다.

② 유형별 체육단체는 장애유형별 종합대회를 종목별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주최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진다.

② 가맹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가맹단체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제6조(준가맹 단체 및 인정단체) ① 준가맹 단체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정단체는 제5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인정단체는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단체지정)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장애인체육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1. 장애인체육회 규정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궤위 또는 사고
 4.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사유로 사업 수행 불가
 6.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정한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3.>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가맹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1인 이상의 감사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가맹경기단체의 승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승인을 사무처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연임횟수 산정 시 가맹단체 지부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회장·감사를 선임한 임원 선출당시의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증원 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이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이사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 또한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과 같다.

⑨ 제1항의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가맹단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을 위한 세부기준은 가맹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의 회장과 임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7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④ 가맹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가맹단체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신설 2025. 2. 18.>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2. 18.>

제11조(임원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이사회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1. 삭제<2025. 2. 18.>
2. 이사 중 2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감사가 2인일 경우 반드시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가맹단체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⑦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가맹단체 회장이 될 수 없다.<신설 2025. 2. 18.>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가맹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단체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읍·면·동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단체 읍·면·동지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가맹단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1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선임 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③ 선임 임원은 해당 경기단체 및 다른 경기단체의 선수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가맹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가맹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가맹단체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가맹단체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읍·면·동지부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가맹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가맹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⑧ 가맹단체의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가맹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장애인체육회 총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3.>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3.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0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22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가맹단체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 제23조(설치)** ① 가맹단체는 당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읍·면·동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가맹단체 지부의 권리 및 의무는 제5조에 준하여 정한다.
- ③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는 그 사무소를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규약은 가맹단체의 규약(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가맹단체를 경유하여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⑤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선임임원은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선임임원 인준 시 해당 가맹단체에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 ⑥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는 해당 가맹단체에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가맹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⑧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임원이 가맹단체 또는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맹단체 상벌규정 및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 ⑨ 전기 8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본 규정,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 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24조(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이사회) ①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각 읍·면·동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
 2. 가맹단체 읍·면·동 지부 소재지의 단체별 이사 각1인
- ② 전항에 의한 이사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1. 등록단체(팀)별 이사 약간인

③ 동일인이 2개의 단체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제2항 제1호의 등록 단체별 이사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자산) 가맹단체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6. 사업수입금(후원금 등)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수입금

제26조(자산의 구분) ① 가맹단체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가맹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관리) 가맹단체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가맹단체가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 하거나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개정 2025. 2. 18.>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재산

② 가맹단체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18.>

③ 가맹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

「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5. 2. 18.>

제28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실적을 명기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 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2. 18.>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제8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3조(규약(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승인) ① 가맹단체는 이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경기단체의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② 가맹단체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2. 18.>

③ 당해 가맹단체 규약(정관) 이외 제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25. 2. 18.>

④ 당해 가맹단체 규약(정관) 이외 제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신설 2025. 2. 18.>

⑤ 가맹단체의 규약(정관) 및 제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18.>

제34조(규약의 해석) 규약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중앙협회 문서 협의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가맹단체 시·도 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18.>

부 칙(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